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실시〉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27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참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2211524, 2025. 7.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17.
3. 회부연월일 : 2025.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u>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u>) (생략) <신설>	제31조의2(<u>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임하고 있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검토의견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임.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새로 임명할 경우 미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해당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음.¹⁾

1)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

그러나,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는 경우 인사청문 실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이 달라지게 되므로, 유임되는 국무위원이 이러한 변화된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하여 유임된 국무위원의 이해도와 정책 수행 능력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에 맞춰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사청문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다만, 유임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임명 당시 실시된 바 있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를 재차 실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견도 존재하므로,

국회의 인사 검증권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라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인사혁신처는 인사청문은 주요 직위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의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한 차례 인사청문을 거쳐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에서 국무위원의 ‘유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유임은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임명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청문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2211524)이 함께 발의되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참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2211524, 2025. 7. 17)

문 의 처
02)6788-53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2211524, 2025-07-17)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부 칙